

의안번호	2208655
의 퇴 인	김선민 의원
회 답 일	2025.2.27.
추계번호	25C0590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6,000만원 (연평균 1,200만원)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국가정신건강위원회 (안 제9조)	12	12	12	12	12	60	1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 (국가정신건강위원회)	○ (제1항)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(이하 “국가정신건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 1. 국가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.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정신건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2	안 제9조 (국가정신건강위원회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9조에 따른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른 “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”¹⁾의 유사사례를 준용
 - 개정안에 따라 국가정신건강위원회는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²⁾하되,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회의 수당 지급이 필요한 민간위원은 15명 위촉하는 것으로 가정
 - 기획재정부의 「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을 준용하여 대면 회의 시에 민간위원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
 - 회의 개최 횟수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사례를 준용하여 연간 4회로 가정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1)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5조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

2) 안 제9조(국가정신건강위원회)

② 국가정신건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,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국가보훈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, 여성가족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, 국무조정실장, 법제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.

⑤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,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정신질환자의 가족으로 한다.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회의수당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본 추계에서는 해당 위원회 설치·운영에 회의수당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-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해당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회의수당 지급이 필요한 민간위원의 수에 연간 회의 개최 횟수와 회의 수당을 곱하여 추계
 - 위촉직 위원은 15명으로 구성하고, 회의 참석수당 단가는 20만원, 회의 개최 횟수는 연 4회로 가정
 - (회의수당 지급 대상자 수) 유사사례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7명은 위촉 민간위원이므로, 본 추계에서는 30명의 위원 중 국가정신건강위원회 민간위원을 15명 위촉하는 것으로 가정
 - (회의수당 단가) 기획재정부의 「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을 준용하여 20만원으로 적용하였고, 추계기간 동안 단가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
 - (회의 개최 횟수) 회의 횟수는 연 4회 대면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
4.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6,000만원 (연평균 1,200만원)으로 추계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국가정신건강위원회 (안 제9조)	12	12	12	12	12	60	1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 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강시온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시온	02-6788-4742	sionkang@assembly.go.kr